

리 흥 쑤 해 바 파 - ◇ 거 | ㄱ ㅎ ○  
ㄱ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ㅎ 흥 파 해 바 쑤 - □ ㅓ | ㄱ ㅌ ㅍ ○

## 국어책임관이란?

공공기관에서의 올바른 언어사용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과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행정용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등 공공기관이 바른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리 흥 파 해 바 ㄱ ㅎ ○  
>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ㅎ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리 흥 파 해 바 파 - □ ㅓ | ㄱ ㅌ ㅍ ○

ㄱ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리 흥 파 해 바 파 - □ ㅓ | ㄱ ㅌ ㅍ ○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국어책임관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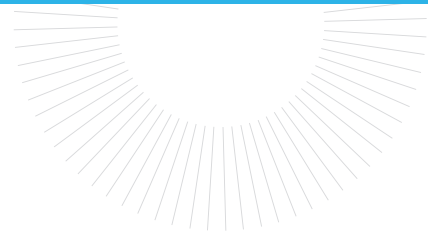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324-01

리 흥 쑤 해 바 파 - ◇ 거 | ㄱ ㅎ ○  
ㄱ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리 흥 파 해 바 쑤 - □ ㅓ | ㄱ ㅌ ㅍ ○

## 국어책임관 길잡이

리 흥 파 해 바 ㄱ ㅎ ○  
>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ㅎ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리 흥 파 해 바 파 - □ ㅓ | ㄱ ㅌ ㅍ ○

ㄱ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리 흥 파 해 바 파 - □ ㅓ | ㄱ ㅌ ㅍ ○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 ㅍ ㅓ ㅎ ㅓ |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ㄱ ㅊ ㅋ ㅌ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국어책임관 길 | 잡 | 이



담 당 안미란 (행정사무관), 김형배 (학예연구사)

## 국어책임관 길 | 잡 | 이

발행일 2011년 7월 29일  
발행인 정병국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 소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 화 02-3704-9436, 9424  
누리집 www.mcst.go.kr

### | 발 간 사 |

## 국어책임관 안내서를 펴내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이나 정책 수립 등의 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정된 법령이나 수립된 정책이 국민에게 잘 이해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한 언어로 전달되고 홍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소속 직원들이 행정언어를 사용할 때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지금까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총 254곳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각 기관별로 직원들의 국어능력 향상, 어려운 행정용어 순화, 새터민이나 결혼이주민 등 국어 소외 계층에 대한 국어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어책임관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국어책임관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교육,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그동안 국어책임관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국어책임관이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바른 국어사용이 확대되고 편리하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는 데 이 안내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 나오는 순서

국·어·책·임·관 길·잡·이  
국어책임관 **발 리 이 해 하 기**

### 01 국어책임관 제도의 필요성

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	9
나.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실태	10
다. 국어책임관의 역할	12
라. 국어책임관 제도의 법적 근거	12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 대상	13

### 02 국어책임관의 업무

가.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17
나. 국어사용 환경 개선	18
다. 해당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19

### 03 국어책임관제도 운영 사례

가. 중앙행정기관	21
나. 지방자치단체	27

### 부 록

부록1 _ 도움 받을 곳	32
부록2 _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39
부록3 _ 공공언어의 요건	43
부록4 _ 국어책임관 제도 관련 법 조항	44
부록5 _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46

국·어·책·임·관    길·잡·이

## 국어책임관    발    리    이    해    하    기



### → 01 국어책임관이란 무엇인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게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 02 국어책임관은 왜 필요한가?

법령 제정이나 정책 수립 등 공공기관의 업무가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고, 쉽고, 분명한 언어 사용을 장려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다.

### → 03 국어책임관은 어떤 일을 하는가?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과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일을 한다.

### → 04 국어책임관은 누가 하는가?

국어책임관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된다.



# 01

## 국어책임관 제도의 필요성

### 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

♣ 공공기관에서의 언어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 › 법령 제정이나 정책 수립 등의 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 › 제정된 법령이나 수립된 정책이 국민에게 잘 이해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한 언어로 전달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반 대중에게 하나의 모범 또는 규범으로 인식되므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 나.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실태

♣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예 Clean 공직사회 Clean 사회 만들기  
Go! Region Get Vision  
WORK NET  
그린투어리즘  
영프로페셔널

### >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투 한자어 사용

예 종점부 가각(→ 길모퉁이) 확장  
환경관리과에 비치된 구매 시방서(→ 설명서)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고지(→ 심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변하기(→ 충당하기)에도 부족

###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

예 자본금이 미달되(→ 미달돼)  
공동주택부지를 조성코저(→ 조성하고자)  
년간(→ 연간) 사업을 정리하여  
소숫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슴(→ 체결되었음)을 공고

### > 어법에 어긋난 표현 사용

예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됨(→ 제외함)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지시서는) 참가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사고 원인 파악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상 건물에 다른 소유자에 속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 > 자연스럽지 않은 문체 사용

예 미검인으로 인하여(→ 검인을 받지 않아) 직권 말소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적합할 것)  
다음과 같이 하천의 점용승인하였기(→ 하천의 점용을 승인하였으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既往보증금액의 만기도래분은 → 기존 보증 금액 가운데 만기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언어 사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낮아진다.
- 국민의 언어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

### 다. 국어책임관의 역할

-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국어책임관이 필요하다.

### 라. 국어책임관 제도의 법적 근거

- ♣ 국어기본법(제정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 및 동법 시행령(제정 2005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8973호)은 공공기관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한국어(이하 국어)’이며(제3조 1항 및 4항),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제14조).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 ♣ 사무관리규정(개정 1996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4989호)은 공문서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작성되는 문서와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되거나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규정하고, 공문서의 작성은 다음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제2장 ‘공문서 관리’ 제2절 ‘문서의 작성·처리 심사’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 대상

- ♣ 대상 기관

#### –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5개 중앙행정부서
- 국세청, 검찰청 등 18개 청
- 법제처, 국가보훈처 2개 처
-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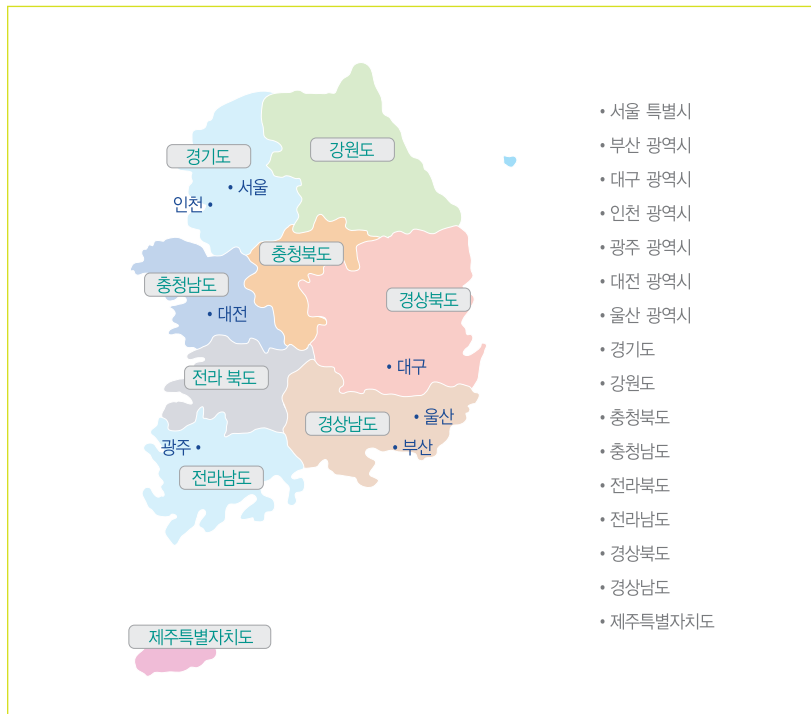
<b>기획재정부</b>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b>교육과학기술부</b>	<b>외교통상부</b>	<b>통일부</b>
<b>법무부</b> ▪ 검찰청	<b>국방부</b> ▪ 법무청 ▪ 방위사업청	<b>행정안전부</b> ▪ 경찰청 ▪ 소방방재청	<b>문화체육관광부</b> ▪ 문화재청
<b>농림수산식품부</b> ▪ 농촌진흥청 ▪ 산림청	<b>지식경제부</b> ▪ 중소기업청 ▪ 특허청	<b>보건복지가족부</b> ▪ 식품의약품안전청	<b>환경부</b> ▪ 기상청
<b>노동부</b>	<b>여성부</b>	<b>국토해양부</b>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 통일교육원(통일부), 외교안보연구원(외교통상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학술원(교육과학기술부) 등
- 각 지방 병무청(병무청), 지방 기상청(기상청), 지방 통계청(통계청) 등

—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등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 담당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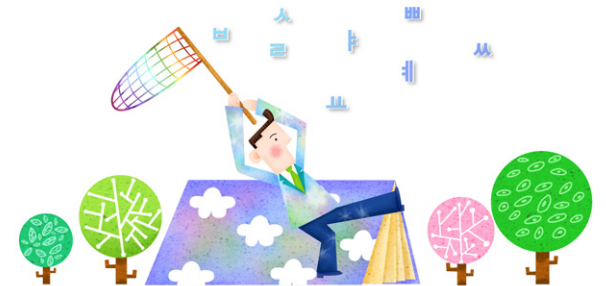
- **국어책임관** :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국어책임관 업무를 계획·총괄



🌐 **실례)** 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부처 간 조율에 따라 다양함.

- 중앙행정기관 : 연설기록비서관(대통령실), 공보담당관(감사원), 홍보기획담당관(지식경제부), 홍보담당관(교육과학기술부), 정책홍보담당관(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홍보담당관(행정안전부), 홍보기획팀장(고용노동부), 대변인(조달청, 통계청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 대변인(인천광역시), 문화수도지원과장(광주광역시), 문화정책과장(제주도) 등

- **보좌 공무원** :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 공무원을 둔다.



# 02

## 국어책임관의 업무

### 가.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알기 쉬운 행정용어의 개발과 보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산림용어 검색서비스  
(<http://green.daum.net/dic/main.jsp>)

산림청 산림·임업 용어사전 발간  
(2010)

-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와 운영(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농촌진흥청 등)



### 실례

- '디지털농업용어사전 2.0' 서비스 운영(농촌진흥청)
  - 출판물 형태의 농업용어사전을 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농업 용어사전을 개발하여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 초기 화면에서 검색 서비스 제공
- 산림·임업용어 사전 발간(산림청)
- '올챙이 연못 게시판'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청)
  -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사용을 위한 직원 간 질의응답 및 자료 공유

### 나. 국어사용 환경 개선



농림수산물부 농산물품질  
관리원 간판 개선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

### 다.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 ♣ 국어문화학교



국어문화학교 입교식(국립국어원)



원의 특별반(한국관광공사)

#### ● 사례



- 국유림관리소 설치 각종 입간판 등의 기관 명칭을 '○○지방산림청'으로 표기(산림청)
- 2010 대구시 언어경관의 실태와 개선 방안 설명서 배부(대구광역시)
- 2009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노인 등 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지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제주특별자치도)

#### ● 사례



- 행정용어·행정서식·전문용어 순화 및 관련 위원회 운영
- 용어 순화를 위한 '○○행정용어 자문단' 구성 운영
- 국어문화학교 교육 등(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가권익 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충청북도)
- 직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능력 인증 가점 제도 시행 (경찰청,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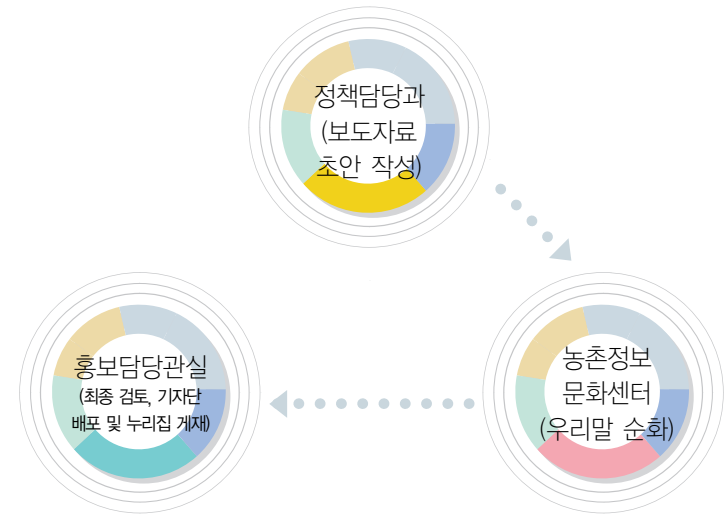
# 03

##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사례

### 가. 중앙행정기관

#### ♣ 농림수산물부

##### > 행정용어 등 정책 발표 자료 우리말 순화 체계 운영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 용어 순화(국립종자원)



- 플로피디스크→이동식 저장매체 / 전자적 기록매체, 작물→식물,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의하여→따라, 의함→따름, 거절 사정→거절 결정, 당해→해당 등
- 강도→정도, 폭→너비, 첨단→끝, 다소/약간→조금, 횡단면/종단면→가로자른면/세로자른면, 적색→빨강색, 백색→흰색, 황색→노랑색, 청색→파랑색, 등황색→오렌지색, 절간→마디사이, 반엽→무늬, 복륜→가장자리 무늬, 중반→가운데 무늬, 화서→꽃차례, 주두→암술머리, 약→꽃밥, 화사→수술대, 엽병→잎자루, 엽산→잎몸, 예첨형/점첨두→점차 뾰족한, 첨형/예두→뾰족한, 둔형/둔두→뭉툭한, 원형→등근, 예요두→급히 뾰족한 등

> 청사 내 언어 환경 개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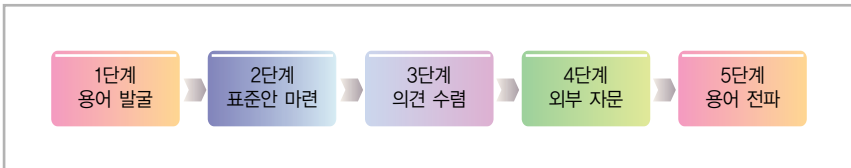


- 안내 표지판 한글 표기와 디자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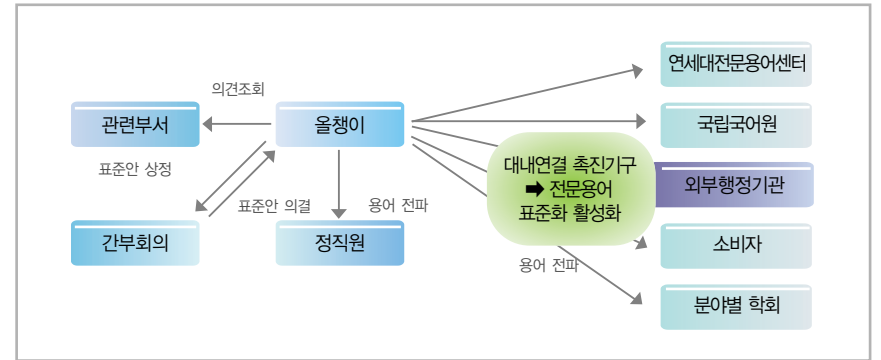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용어 등 전문용어 표준화 및 순화

- 연구 모임 '올챙이(올바른 용어 책임이)' 및 올챙이 연못(온라인) 게시판 운영
- 용어 순화 과정



-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전문가·소비자 단체 특별팀 구성·운영
- 고객을 위한 표준용어해설집 발간·배포



### 쉬운 용어 순화 예시표

연번	현행 용어	쉬운 용어	한자 또는 외국어
1	가성	거짓-	pseudo-
2	가역적/가역적인	회복 가능한	reversible
3	가임여성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
4	감약	감소하여 복용(사용)	-
5	교상	물린 상처	bite wound
6	개구/구	구멍	orifice
7	개방창/개열된 상처	열린 상처	open wound
8	객담	가래	sputum
9	거담제	가래약	expectorant
10	건	힘줄	tendon
11	건염	힘줄염	tendinitis/ tendonitis
12	간부전	간기능상실	肝不全, liver failure
13	건피증	피부건조증	xeroderma
14	검결막염	눈꺼풀결막염	blepharoconjunctivitis
15	검구유착	결막붙음증	symblepharon
16	길항작용	억제작용, 대항작용	counteraction
17	견갑골	어깨뼈	scapula
18	견관절	어깨관절	shoulder joint/ 肩關節
19	뇨저류	소변이 고임	ischuria
20	선통	쏘는 통증	gnawing pain

- 국제기구, 각 국 정부기관 등 통일된 한글 명칭 사용 협조 요청

미 CDC : 질병예방통제센터 또는 질병관리센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일본 MHLW : 일본 후생노동성 또는 보건 후생성 → 일본 후생노동성(MHLW)

-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용어 공모 · 개선 · 관계 부처 전파

HACCP 제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CCP 적용제품 → 안전관리인증식품(HACCP)

- 국어책임관이 직접 전 직원 대상 대언론 응대 방법 및 보도 자료, 보고서 작성법 교육 및 보도 자료, 정책 홍보 자료 등의 국어 감수 강화
- 국어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운영

### > 국어사용 환경 개선

- 고시 등 제정 · 개정 실무 길라잡이 발간, 배포
- 의약품, 식품 등의 설명서, 포장지 설명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의약품 표시 기준 마련 및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개정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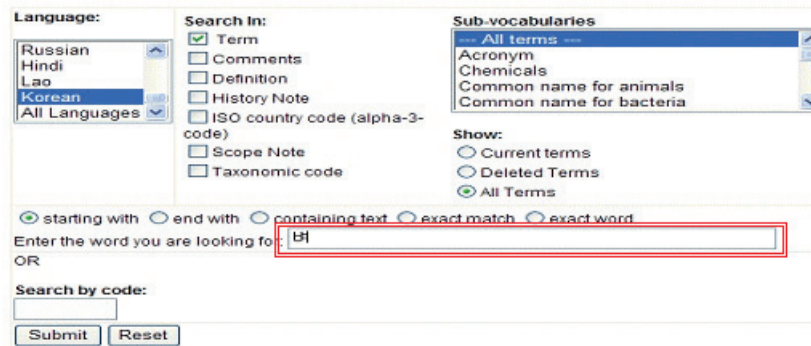
> 국어사용 환경 개선

- '디지털 농업용어 사전 2.0' 서비스 운영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정보시스템 (AGROVOC)www.fao.org/agrovoc에서 한글 농업용어 서비스 제공

Search AGROVOC



나. 지방자치단체

♣ 자치법규 등 행정용어 순화

- > 조례, 규칙 등 제정 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알기 쉬운 우리말 자치법규 만들기 등)
- > 행정용어 순화 및 자문위원회 운영(충청북도)

연번	순화대상어	확정순화어	연번	순화대상어	확정순화어
1	글로벌	국제(적), 세계(적)	18	아이디어챌린지	창안공모전
2	네트워크	-망, 연계망, 연락망	19	오피니언리더	여론주도층 여론이끌이
3	노에러 노다운	완벽한	20	온라인	누리망, 전산망
4	뉴타운	새마을	21	카탈로그	안내서
5	로열티	사용료	22	캠페인	운동, 홍보
6	리더	지도자	23	캠프	체험교실
7	리스크	위험(요인, 요소)	24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8	마인드	의식	25	코너	방, 미당
9	매뉴얼	지침, 편람, 안내서	26	클린	투명한, 깨끗한
10	매니저	지도자, 관리자, 운영자	27	탑프루트	으뜸과실
11	메시지	알림(말)	28	파워블로거	인기누리(방)지기
12	모니터	살핌이	29	파트너십	동반관계
13	백드롭	배경막	30	패턴	유형
14	비즈니스	사업	31	팸투어	(초청)홍보여행
15	서번트 리더쉽	섬김지도력	32	포스팅	올리기
16	스크랩	자료모음	33	테이프컷팅	색줄자르기
17	스토리텔링	이야기짓기			

- >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쉽고 바른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아름다운 우리말 게시판' 운영 등

♣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 국어능력 인증 가점제도 시행(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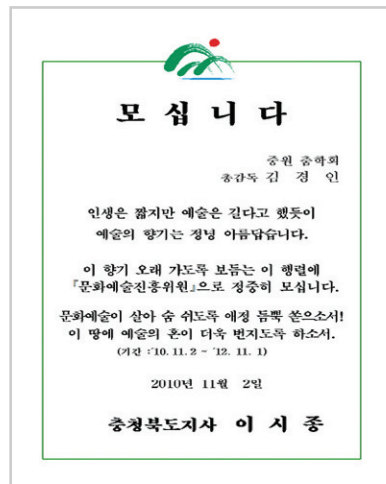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 가점 부여 기준

직급	6·7급	8·9급
인증 내용	한국실용쓰기검정 2급 이상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한국실용쓰기검정 3급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가점	0.5점	0.25점

※ 외국어 가점 : TOEFL 550점 이상(0.5점), 500점 이상(0.3점)

-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장려
- 상장, 표창장, 초청장, 위촉장 등 전수형 문서를 대상으로 전수 취지가 담기도록 쉬운 우리말로 작성



♣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교실 운영

- > 노인 등 성인 문해 교실 운영
- >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한글 교육 지원
- > 성인 및 다문화 이주민 대상 한글 백일장 실시

♣ 지역 언어경관 개선

- > 간판 개선 사업 등 언어경관 개선을 위한 의식조사 실태분석, 안내서 제작 배포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국어 교육



### ♣ 지역어 보존

#### >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조사

- 사라져 가는 제주어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 알림
- 학교 교육에서의 제주어 교육에 대한 파급 효과 증대
-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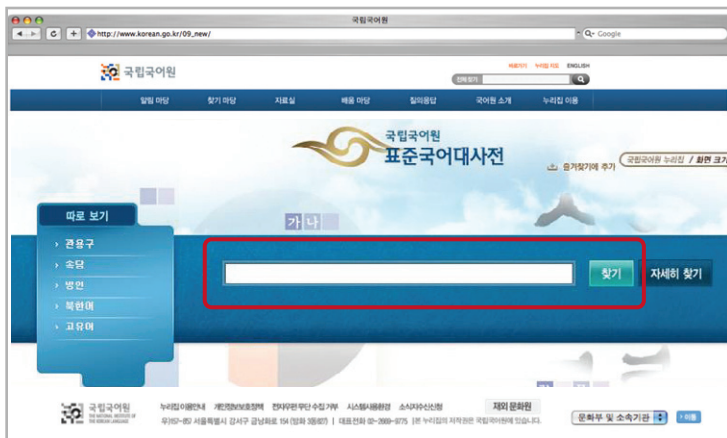
## 부 록 1 도움받을 곳

###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찾기 마당 →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표준국어대사전



### 공공언어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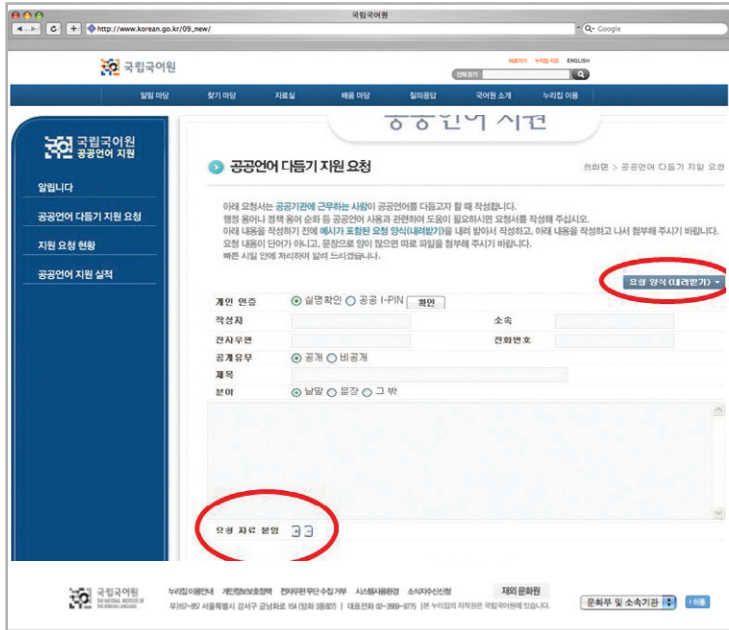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요청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공공언어 지원  
(<http://www.korean.go.kr/publang>)

### 공공언어 지원 (1)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공공언어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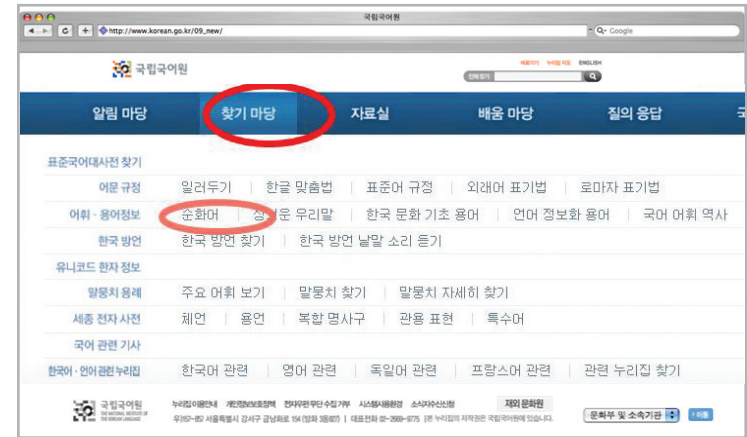
### 공공언어 지원 (2)



### 순화어 찾기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찾기 마당 → 순화어  
(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refine.jsp)

### 순화어 찾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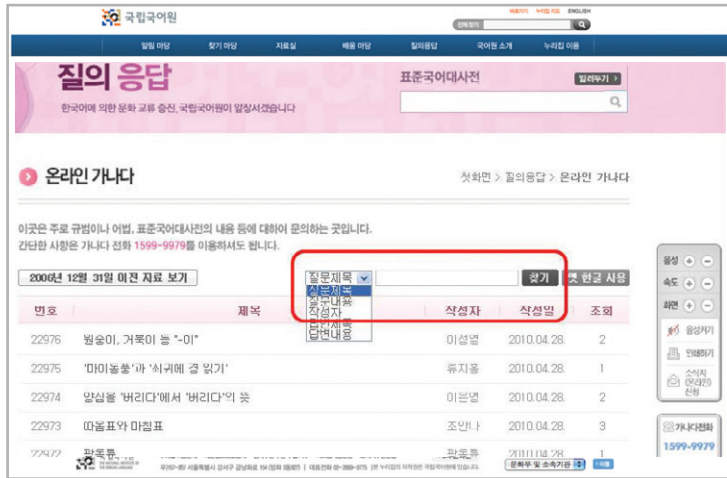
### 순화어 찾기 (2)



### ● 온라인 가나다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질의응답 → 온라인 가나다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qna\_list.jsp)

#### 온라인 가나다



### ● 가나다전화: 1599-9979

- 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상담
- 상담 시간: 월~금, 9: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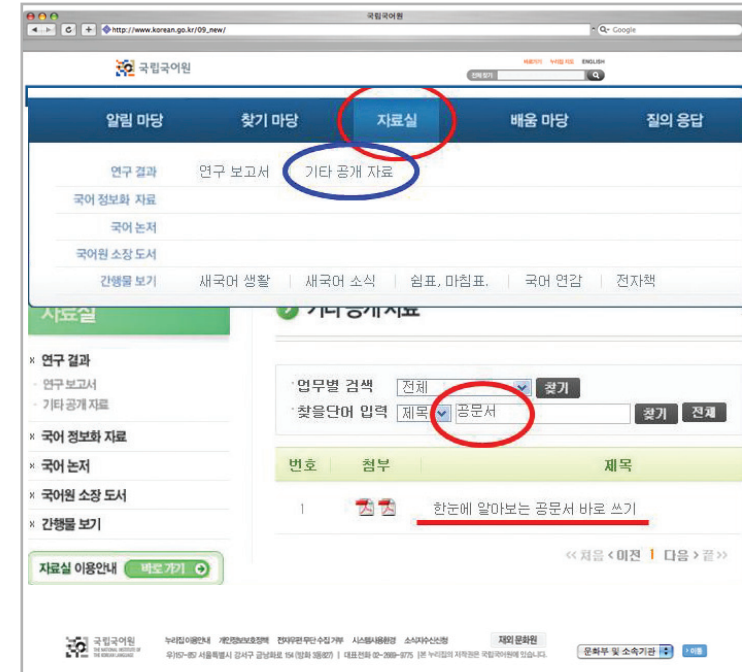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 ●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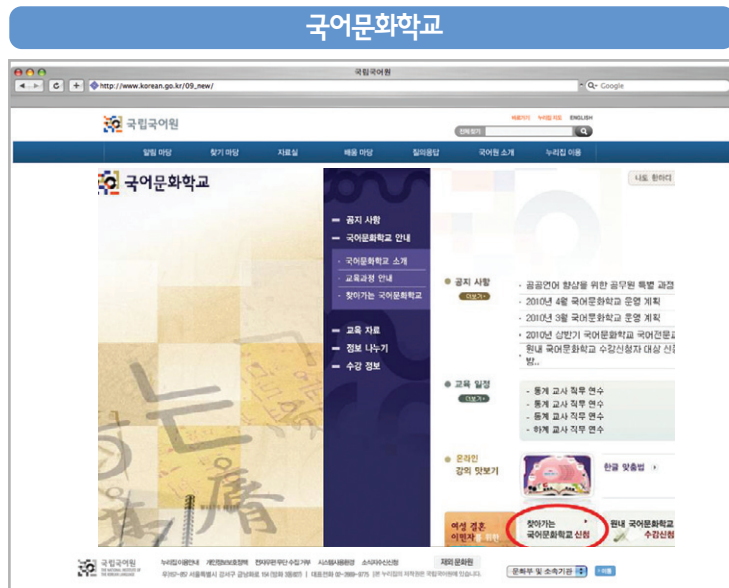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실 → 기타 공개 자료 - ‘공문서’ 입력(PDF 파일 내려받기)
- 책자 요청: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또는 전화 (02) 2669-9726

####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문화학교**

-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등 국어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주 5일 35시간)
- 신청 안내: (02) 2669-9752, 9729, 9662
-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한글 맞춤법, 국어순화, 공문서 바로 쓰기 강의 등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음.



**부 록 2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주 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대 2호관 309-1호  
**전 화** 033-250-8137      **누리집** www.koreancontest.org

**■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대 2호관 309-1호  
**전 화** 033-250-8137      **누리집** kcc.kangwon.ac.kr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 309호  
**전 화** 053-950-7498      **누리집** knukorean.knu.ac.kr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101동 220호  
**전 화** 055-772-0761      **누리집** ckc.gnu.ac.kr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주 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415호  
**전 화** 02-735-0991      **누리집** www.barunmal.org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113호  
전 화 051-200-7180      누리집 korean.donga.ac.kr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충남 천안시 안서동 300번지 상명대학교 송백관 212호  
전 화 041-550-5391      누리집 smkorean.net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도서관 1206호  
전 화 053-810-3561      누리집 ccrk.yu.ac.kr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대학로 10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206-1호  
전 화 052-259-1911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대 학관 308호  
전 화 02-3277-3250      누리집 munjang.net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 사범대학 1호관 305호  
전 화 062-530-0313      누리집 kor.chonnam.ac.kr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교수연구동 802호  
전 화 063-220-3095      누리집 korean.jj.ac.kr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층 8204호  
전 화 064-754-2712      누리집 malgeul.jejunu.ac.kr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7호  
전 화 043-229-8311      누리집 www.koreanlab.or.kr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충북 청주시 성봉로 410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418-1호  
전 화 043-261-3450      누리집 korean.chungbuk.ac.kr

■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팀  
전 화 02-781-3854      누리집 korean.kbs.co.kr/main.php

■ 한국방송공사 국어문화원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팀  
전 화 02-781-1702      누리집 korean.kbs.co.kr/main.php

■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관 305호  
 전 화 042-629-7474      누리집 urimal.hnu.kr

■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번지 국제문화대학  
 전 화 031-400-5312

■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대학교 서호관 438호  
 전 화 032-860-7845



**부 록 3 공공언어의 요건**

-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아래 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각자의 문서를 점검해 본다.

영역	요소	점검	항목
정확성 (범용 기준)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표현의 적합성		문장 성분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는가?
적절성 (가중치 기준)	공공성 (생산자 중심)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지양하였는가?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을 지양하였는가?
	정보성 (텍스트 중심)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용이성 (수용자 중심)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부 록 4 국어책임관 제도 관련 법 조항

### ●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

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 부 록 5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11. 2. 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 게임콘텐츠산업과장
3. 국어정책과장
4. 관광정책과장
5. 중무1담당관
6. 체육정책과장
7. 미디어정책과장
8. 분석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



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국어민족문화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